

계약안내

당첨호수의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을 확인하신 후 계약 기간 내
계약금 납부와 계약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당 사 견본주택에서 계약을 체결하셔야합니다.

계약체결 일정 안내 ※ 예비 입주자의 경우 별도 안내

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계약체결 일정 “선착순”으로 운영되며 시간에 맞게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계약체결(아파트 공급계약진행) ※ 추가선택품목(옵션) 추후 별도 안내 예정		
계약체결 기간	계약체결 시간	계약장소
2025.08.25(월) ~ 2025.08.27(수)	오전 10시 ~ 오후 5시 ※시간 준수	‘제기동역 아이파크’ 견본주택 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-13)

※ 계약체결 전 서류 미제출자의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당첨유형에 맞는 당첨자 구비서류 안내문 참조)

※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※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※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.

계약체결 구비서류

※ 아래 제반 제출서류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(2025.07.25.)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본인 계약시	자격검증서류 일체	본인	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(※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)
	계약금(무통장 입금증)	-	아파트 계약금, 발코니 확장 계약금 계약금의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
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(모바일 신분증 불가) (외국국적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	전자수입인지 (종이문서용)	본인	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 ※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①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: 75,000원 ②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: 175,000원 ※ 발코니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① 1천만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 : 20,000원 ※아파트/발코니 각각 발행
	인감증명서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발급기준 : 본인 발급용 / 발급용도 : 계약 체결용 ※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시 ‘발급용도(직접 작성) : 서류제출 및 계약 / 제출처 : 제기동역 아이파크’ ※ ‘본인서명사실확인서’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
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
	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	본인	작성 후 지참(아파트 공급대금,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(옵션)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함)
	추가선택품목(옵션) 신청서	-	추가선택품목(옵션) 선택 후 지참
	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	-	서류검수 시 제출서류 일체(제출한 경우 제외)
제 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(본인 외 모두)	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하며,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		
	위임장	본인	[견본주택 비치]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용도 : 아파트 계약 위임용(본인 발급용) 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, 대리 계약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2통 제출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불가
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대리인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/서명 또는 날인 (외국국적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
※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

※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

계약금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

금융기관	금융기관	계좌번호	예금주
분양대금	하나은행	591-910070-44404	(주)하나자산신탁
발코니 확장비	하나은행	591-910070-43804	(주)하나자산신탁
입금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기재 (예 : “101동501호 “당첨자 홍길동 → 1010501홍길동)			

※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,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,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.

※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※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※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,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,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